



보도일시	2022. 1. 3.(월) 조간 *인터넷 2022. 1. 2.(일) 12:00 이후 / 총 4쪽		
담당기관	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부	부 장 이동수 차 장 윤현경	052-703-0751 052-703-0767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

- 2022년 총 3,563억원 지원, 1. 3.(월)부터 접수 -

- ❖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우선지원
- ❖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

- 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)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·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「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」을 확대 시행한다.
- 「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」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·저리 조건으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으로, 올해는 총 3,563억원(21년 대비 335억원 증액)을 지원한다.
-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(고용노동부 승인)으로,
 -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.
- ※ 지원 제외 :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, 최근 3년(‘19년~‘21년)간 정부지원 정책 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,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 등
-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,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%를 연리 1.5%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.

- 특히 최근 10년간(11~20년) 제조업의 끼임·추락 사고사망의 73.6%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*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
 -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, '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**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.

* ①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,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, ③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

** 안전투자혁신사업: 노후 뿌리공정·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(50%, 최대 1억원 한도)를 지원하는 사업

-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·환경 개선 설비로, 다음과 같다.

1.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(옵선 등 부속설비 포함)
 - ※ CNC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, 사출성형기, 산업용 로봇, 컨베이어, 크레인, 프레스 등
2.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
3.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
4.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

-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*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**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-3088로 문의하면 된다.

- 다만,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.

* 신청서류 양식: clean.kosha.or.kr ➡ 알림마당 ➡ 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

**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처(공단 일선기관) 목록: [붙임2] 참고

-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“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,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해”라며, “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하여,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 (끝)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윤현경 차장(☎052-703-0767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[사업 안내문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]

'22년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

용자제한: 3,563억원

※ '21년 용자금 자원 3,228억원 대비 10.4%(약 335억원) 예산 증액

신청기간: '22. 1. 3.(월), 09:00부터(자원 소진 시까지)

지원대상

1.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(300인 미만 우선지원)
2.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(고용노동부 승인)

☞ 지원 제외 대상('22년 사업계획 추진지침 확정에 따라 변경 시에는 제공지)

1. 용자금 지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
2. 용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
3.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(단, 당해연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지원사업장*은 제외)
*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 결정 이후 보조금 외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용자금 지원 신청

지원금액: 사업장당 10억원 한도(기 지원 용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)

지원조건: 고정 연리 1.5%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
주요 지원품목

1.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
※ 주요설비명: CNC 머시닝센터, NC 밀링, 크레인, 사출성형기, 산업용 로봇 등
2. 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
3.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
4.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

신청방법

- 공단 일선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- 제출서류: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일체

☞ 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

○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➡ 알림마당 ➡ 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(문의: ☎ 1544-3088)

붙임2

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처 목록(☎ 전국 대표전화: 1544-3088)

연번	일선기관명	관할구역
1	서울광역본부	서울특별시 중구·종로구·동대문구·서초구·강남구·용산구·마포구·서대문구 및 은평구
2	강원지역본부	강원도 춘천시·원주시·홍천군·인제군·화천군·양구군 및 횡성군, 경기도 가평군
3	서울남부지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·양천구·강서구·관악구·구로구·금천구 및 동작구
4	서울동부지사	서울특별시 성동구·광진구·송파구·강동구·중랑구·노원구·강북구·도봉구 및 성북구
5	강원동부지사	강원도 강릉시·속초시·동해시·태백시·삼척시·양양군·고성군·영월군·정선군 및 평창군
6	부산광역본부	부산광역시
7	울산지역본부	울산광역시
8	경남지역본부	경상남도(경상남도 김해시·밀양시·양산시 제외)
9	경남동부지사	경상남도 김해시·밀양시·양산시
10	광주광역본부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나주시·화순군·곡성군·구례군·담양군·장성군·영광군 및 함평군
11	전북지역본부	전라북도 전주시·남원시·정읍시·장수군·임실군·순창군·완주군·진안군 및 무주군
12	전남지역본부	전라남도 목포시·무안군·영암군·강진군·완도군·해남군·장흥군·진도군 및 신안군
13	제주지역본부	제주특별자치도
14	전북서부지사	전라북도 익산시·김제시·군산시·부안군 및 고창군
15	전남동부지사	전라남도 여수시·순천시·광양시·고흥군 및 보성군
16	대구광역본부	대구광역시 중구·동구·북구·수성구, 경상북도 영천시·경산시 및 청도군, 군위군
17	경북지역본부	경상북도 구미시·김천시·영주시·상주시·문경시·안동시·칠곡군·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·봉화군·예천군·의성군·영양군 및 청송군
18	대구서부지사	대구광역시 서구·남구·달서구·달성군, 경상북도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·고령군 및 성주군
19	경북동부지사	경상북도 포항시·경주시·영덕군·울릉군 및 울진군
20	인천광역본부	인천광역시
21	경기지역본부	경기도 수원시·용인시·화성시·평택시·오산시·안성시
22	경기북부지사	경기도 의정부시·동두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양주시·포천시·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
23	고양파주지사	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
24	경기중부지사	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
25	경기서부지사	경기도 광명시·안양시·과천시·의왕시·군포시·안산시 및 시흥시
26	경기동부지사	경기도 성남시·하남시·이천시·광주시·여주시 및 양평군
27	대전세종광역본부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·논산시·계룡시·금산군
28	충북지역본부	충청북도 청주시·진천군·괴산군·보은군·증평군·옥천군 및 영동군
29	충북북부지사	충청북도 충주시·제천시·단양군 및 음성군
30	충남지역본부	충청남도 천안시·아산시·당진시·보령시·서산시 및 예산군·홍성군·서천군·부여군·청양군·태안군